

『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』

편집위원회 운영규칙

제1조(목적)

편집위원회는 다문화연구소의 학술논문집 『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』의 발행을 위해 구성되며,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.

제2조(구성)

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이 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제3조(편집위원장 선출)

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소장이 임명하며,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편집위원장 임기)

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편집위원회회의)

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가지며,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시 성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6조(편집위원 자격 및 임기)

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.

- (1)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, 다문화 관련 기관장으로 한다.
- (2)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편집원칙)

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.

- (1) 접수된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, 심사과정을 진행한다.
- (2)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.
- (3)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“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”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, 심사자의 심사평에 의거하여 수정된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게재될 논문을 선정한다.
- (4) 동일 필자의 3회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

제8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9조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